

대전천동3 5블록 10년공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 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 금회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별도 기간연장 없음)**
-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2022.06.24. 예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66(2018.03.29)호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거주요건 적용 철저 협조요청」에 의거 적격 대상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공급일정

□ 공급대상

- 공급규모 : 지하3층~지상29층, 5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712세대 중 지구주민 우선공급분을 제외한 642세대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28-9번지 일원
- 주택형별 내역

주택형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계약면적(계)	공유대지면적(㎡)	건설호수	최고층수	1층세대수	입주예정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 계							712		16		
039.9800A	39A	39.98	14.1974	2.3577	20.6314	77.1665	21.4416	208	29	6	'24.12
051.8900A	51A	51.89	17.4875	3.0601	26.7774	99.2150	27.4728	126	28	1	
051.8900B	51B	51.89	17.4875	3.0601	26.7774	99.2150	27.4728	28	28	1	
059.6400B	59B	59.64	21.6821	3.5172	30.7768	115.6161	32.1763	29	29	1	
059.9800D	59D	59.98	20.7435	3.5372	30.9522	115.2129	31.9569	321	29	7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9형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39,51형은 발코니 비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공급일정

구 분	일 자(예정)	비 고
• 입주자 모집공고	2022.06.24.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추천대상자 회신기한	2022.06.30.	동 안내문 참고
•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2.07.04.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서류 접수	2022.07.	10년공임 접수처(사전예약)
• 계약 체결	2022.09.	10년공임 접수처(사전예약)

-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 10년공임 접수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2

II.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20%)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80%)	
5	039.9800A	39A	30,300,000	6,000,000	24,300,000	346,000
	051.8900A	51A	45,700,000	9,100,000	36,600,000	418,000
	051.8900B	51B	45,700,000	9,100,000	36,600,000	418,000
	059.6400B	59B	61,600,000	12,300,000	49,300,000	497,000
	059.9800D	59D	60,800,000	12,100,000	48,700,000	494,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39,51형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임대조건이 산정되었습니다.
-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 전환 관련 사항은 입주 전 안내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 적용**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5	039.9800A	39A	30,000,000	125,000	60,300,000	221,000
	051.8900A	51A	45,000,000	187,500	90,700,000	230,500
	051.8900B	51B	45,000,000	187,500	90,700,000	230,500
	059.6400B	59B	61,000,000	254,170	122,600,000	242,830
	059.9800D	59D	60,000,000	250,000	120,800,000	244,000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5	039.9800A	39A	43,750	21,000,000	9,300,000	389,750
	051.8900A	51A	70,830	34,000,000	11,700,000	488,830
	051.8900B	51B	70,830	34,000,000	11,700,000	488,830
	059.6400B	59B	100,000	48,000,000	13,600,000	597,000
	059.9800D	59D	97,910	47,000,000	13,800,000	591,910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총당금 범위 내)

III. 공급자격

□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4. 예정)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66(2018.03.29.)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제한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을 유지한 분에 한하여 추천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p>※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p> <p>[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p> <p>[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IV.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 미리 발급)에 LH청약센터 또는 LH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신청 해야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 한 예비대상자에 한함)
- 예비대상자는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 중 신청 미달된 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예비자로 선정된 분과 함께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각 특별공급의 청약접수 결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는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 내에서 층별, 향별, 타입별,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순번에 따라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순위, 거주지, 성명, 뒷자리 7자리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추천타입 등 정확히 기재)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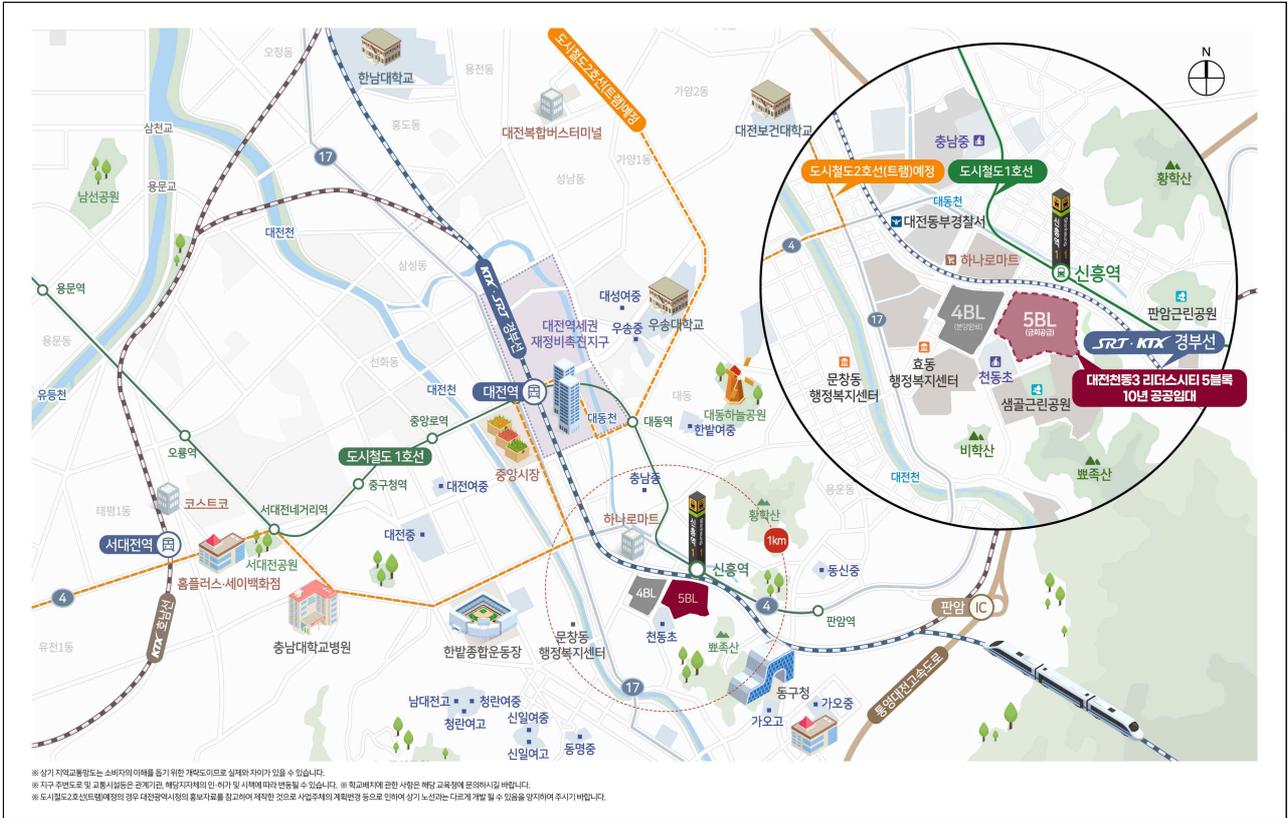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호 또는 1세대 소유 시에도 신청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단,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조건 등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지구 및 단지 여건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4. 예정) 게시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lh-cd.co.kr)**을 통해 신청형별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은 LH청약센터에 게시)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부 (T.042-470-0770)

2022. 05.

붙임1

교통망도



붙임2

단지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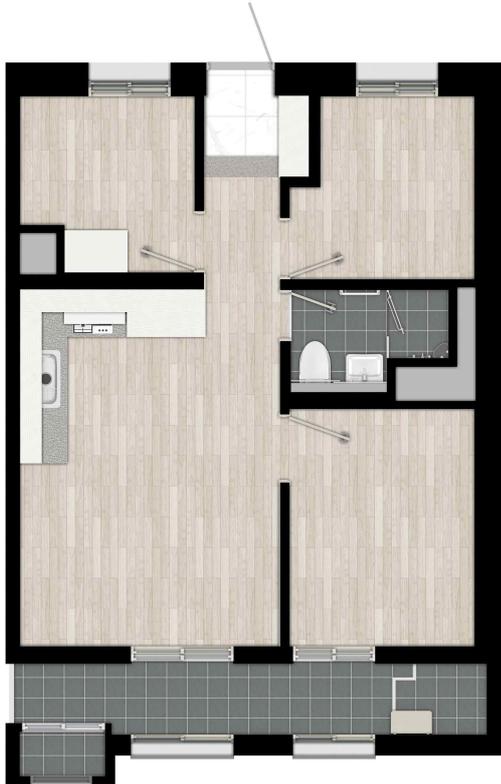




39A



51A



51B



59B



59D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3793호(2013.3.20.)관련 대전광역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장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대전광역시민의 내·외국인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주택공급을 증진한다.
2. 우선공급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적용지역 : 대전광역시 전역
4. 적용기간 : 고시일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371~3)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거주요건 적용 철저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주택청약 및 공급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그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공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서 투기방지를 위해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예: 1년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자로 볼 수 없으며, 동 규정은 동 규칙 제36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포함하여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각종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4. 따라서, 주택공급규칙 제36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우선 공급 거주요건이 고시 또는 공고된 지역에서는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 공급 원칙을 준수하여 추천 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 사업주체는 해당 거주요건을 고려한 추천 순위에 맞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에 추천대상자를 보완 제출받아 입주자를 선정해야만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노부모 부양) 청약 신청자라도 공급규칙 제4조제5항의 거주요건을 지켜야만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의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를 위반하여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102조제13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장), 부산광역시(건축주택과장), 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장), 인천광역시(건축계획과장), 광주광역시(건축주택과장), 대전광역시(주택정책과장), 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장), 경기도지사(공동주택과장), 강원도지사(건축과장), 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 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 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 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 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주택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서울특별시(주거재생과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 경기도지사(주택정책과장), 부산광역시(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과장, 인천광역시(주거환경과장), 지역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 대구광역시(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과장, 광주광역시(도시재생정책과장), 울산광역시(도시개발과장), 도시창조과장, 경기도지사(도시주택과장), 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대전광역시(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재생과장), 한국주택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장), 국군복지단장,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장,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일자리과장), 여성가족부장관(권익정책과장),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지원과장), 대한체육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재혁신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석탄산업과장), 통일부장관(미산가족과장), 인사혁신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지총괄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지원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2018.03.29.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주택기금과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기금과-2166 (2018.03.29.)

접수 판매보상기획처-1394 (2018.03.29.)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 http://www.molit.go.kr
주택정책관실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43 전송 044-201-5530 / kbruce74@molit.go.kr / 비공개(5)